

심사보고서

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41
----------	-----

2024. 7. 15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7월 15일

-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민영완)

가. 제안사유

- 방치되고 있는 오송역 철도 선하부지 공간⁵⁾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업사이클링⁶⁾ 사업 추진으로 도민과 오송역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함.
- 지역의 관문인 오송역을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여 우리 도 이미지 개선 및 방문객 대상 홍보 효과가 기대됨.

5) 교량 아래 토지의 공간

6) 업사이클링(upcycling): 재활용품의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(출처: 환경 경제용어사전)

- 이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》

일반회계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3-9번지 일원(오송역 B주차장)
- 사업기간 : 2024. 8. ~ 12.
- 소요예산 : 37.15억원(설계비 1.55, 공사비 31.7, 감리비 등 3.9) ※ 도비 100%
- 사업규모 : 연면적 990㎡
- 사업내용 :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(도정홍보, 실내 식물정원 등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이번 2024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3-9번지 일원(오송역 B주차장)에 휴게공간 시설 건물을 신축해 취득하려는 것임.
- 현재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국토의 중심역인 오송역은 지속적인 이용객의 증가⁷⁾로 휴게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송역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휴게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.

7) 2023년 오송역 이용객은 1,114만 4,385명으로 이전 최다 기록인 2022년 958만 328명보다 16.3% 증가함. 팬데믹 기간(20~21년)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이용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.

○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의 건은

- 현재 방치되고 있는 오송역 선하부지 유희(遊休)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업사이클링 사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,
- 청주공항과 함께 지역의 관문인 오송역에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역사 내 부족한 휴게시설 문제 해결을 통한 오송역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하며,
- 휴게공간을 도정 홍보 전시관, 실내 식물정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오송역 이용객과 오송역을 찾은 방문객 및 도민들에게 휴식을 넘어 도정 및 시책 관련 홍보와 충족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」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구분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3-9번지 일원 (오송역 B주차장)	990	3,715,000	2024	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		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3-9번지 일원 (오송역 B주차장)	990	3,715,000	2024	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		신축
	기타							
2	토지	이하여백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4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5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계 법령 발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0조의2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</p> <p>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</p> <p>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</p> <p>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</p> <p>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</p> <p>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</p> <p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